

## 화순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11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11. 29

다. 상 정 일 자 : 2005. 12. 9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건설과장 김판일

나. 제안사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현행 규정상 시·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구 조례로 일원화함으로써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안 제2조)
-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안 제4조)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전주, 가로등, 도로의 노면 등 (안 제5조)
-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사용 금지 (안 제7조)
-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안에서 옥상간판의 수평 거리는 30미터 이상(안 제8조)
-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도시지역 외 당해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5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안 제9조)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안 제11조)
  - 편의시설물: 휴지통, 벤취

-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3분의 1이 내로 광고내용을 표시(안 제12조)
-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안 제13조)
- 현수막의 표시방법 :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안됨 (안 제15조)
- 벽보의 표시방법 : 지정게시판 또는 벽보판에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안 제16조)
- 전단의 배부방법: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안 제17조)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안 제18조)
  -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지역
    -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20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간판,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등(안 제21조)
-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 검사인력 시설·장비 구비(안 제25조)
-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제거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 15일이 상 게시 또는 공고(안 제29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석호)

-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도 조례를 폐지하고, 시·군 조례로 일원화 하도록 개정되었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의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아울러 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 절차가 선행되었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붙임 :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 11. .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현행 규정상 시·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구 조례로 일원화함으로써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 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안 제2조)
-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안 제4조)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전주, 가로등, 도로의 노면 등(안 제5조)
-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사용 금지 (안 제7조)
-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에서 옥상간판의 수평 거리는 30미터 이상(안 제8조)
-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도시지역외 당해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5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안 제9조)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안 제11조)
  - 편익시설물: 휴지통, 벤취
-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3분의 1이내 로 광고내용을 표시(안 제12조)
-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안 제13조)
- 현수막의 표시방법: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되며,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안됨(안 제15조)
- 벽보의 표시방법: 지정게시판 또는 벽보판에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안 제16조)

- 전단의 배부방법: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안 제17조)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안 제18조)
  -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 지역
  - .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20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간판,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등(안 제21조)
-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검사인력시설 . 장비 구비(안 제25조)
-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제거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 15일이상 게시 또는 공고(안 제29조)

### 3.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 화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적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5. 선전탑
6.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2. 건물에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중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 지상 변압기함

3. 전주, 가로등 자동점멸기합
4.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 교통안전시설물
6. 낙석방지시설물
7.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8. 도로(인도를 포함한)의 노면
9.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군수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7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물체 또는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이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계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계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이내 이어야 한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이내, 세로 40센티미터이내 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밖에 군수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군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에 위한 광고내용은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밖에 군수가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이상 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군수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절차 등) ①군수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

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외의 위탁 등) 군수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외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외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①군수는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군의 게시관 또는 군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 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30(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군수는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군수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4.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

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